2020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			
▣ 일시	2020년 8월 13일(목) 15:00	▣ 장소	발전노조 회의실

▣ 참석 : 재적 7명 중 6명 참석

▢ 보고사항

1. 주요 활동
2. 주요 회의결과
3. 법률대응 현황
4.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
5. 정규직화 경과
6. 본부별 현안사항

▢ 심의안건

[안건1] 규약, 규정 개정의 건

▷ 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논의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▷ 상벌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▷ 개정(안) 내용

※ 규약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제4조(소속)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.	**제4조(소속)**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**사회서비스**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.

※ 상벌규정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
제5조(표창의 종류)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④ 모범조합원상 : 소속 조합원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.	**제5조(표창의 종류)**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④ 모범조합원상 : **소속 조합원(1명/200명당)**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.

[안건2] 숙소 운영의 건

▷ 숙소 매입에 대해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

▷ 관련한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(안)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다.

▷ 개정(안) 내용

현행	개정(안)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. 2.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	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. 2.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**매입,**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
제4조(집행)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. 1. 제3조 1,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	**제4조(집행)**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. 1. 제3조 1,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. **단 2항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.**

[안건3] 국정감사 대응의 건

▷ 의제 추가 발굴 및 자료제출 요구, 질의서 작성,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등 취합 후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.

[기타토의]

1. 일정 공유

▷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관련 국회토론회

▷ 일시 : 9월 3일(목) 15:00

▷ 장소 :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